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‘수익사업 승인서’와 ‘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’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,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6호 중 “법 제58조의2”를 “법 제58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제29조의2제6항 중 “별지 제41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41호서식”으로, “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”를 “승인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, 별지 제40호서식, 별지 제40호의2서식,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별지 제41호의3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
신청내용	사업명(업종)	
	사업장 소재지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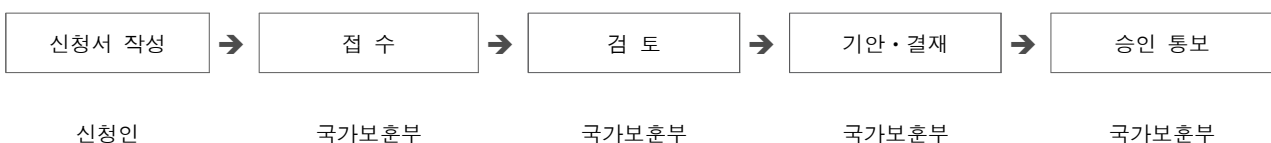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계획서 1부 - 사업장 소재지,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-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-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-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-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-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신청내용	종전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	
		발급일자	발급번호	
	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	사업장 소재지		
		변경 내용		
		변경 사유	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 변경계획서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-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-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2.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기안·결재	➔	승인 통보
신청인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

수익사업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
신고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
변경사항	①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②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 ③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④ []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(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변경내용	변경예정일	
	변경 내용	
	변경 사유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신고서 제출 신고인	→ 접수 국가보훈부

제 호

수익사업 승인서

1. 단 체 명:
2. 대 표 자:
3. 주 소:
4. 승인내용:
5.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:
6. 유효기간: . . . ~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·제58조의3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·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
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	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신청내용	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	
			발급일자	발급번호
		사업장 소재지		
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		
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			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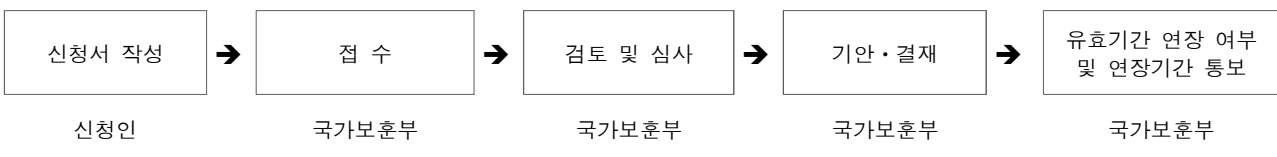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그 밖에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29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<u>법 제58조의2</u>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6. ----- ---- <u>법 제58조의2제3항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~ ⑤ (생략)	제29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	⑥ ----- -----

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통보해야 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<u>별지 제41호의 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 간 연장서</u>를 발급해야 한다. ⑦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41호서 식</u>----- <u>승인서</u>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